

추 가 약 정 서

(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유니온저축은행 귀하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약정한
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
약정입니다.

제 2조(용어)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‘규제대상 아파트’란 ‘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’를 말합니다.

제 3조(기보유 주택) 채무자 및 그 배우자(결혼예정자^{주1)}를 포함, 이하 같음)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나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포함, 이하 같음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에 한함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4조(주택취득 등 제한) 채무자 및 그 배우자는 본 대출기간 동안 2주택 이상을

취득^{주2)}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습니다.

주2) 소유권 취득,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제 5조(주택보유수 확인) ① 저축은행은 최초 대출실행 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(이하 “HOMS”라 함)을 통해 저축은행에 등록된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합니다.

② 대출실행 후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HOMS를 통해 확인합니다.

제 6조(의무위반이 아닌 경우) 제 5조에 따라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단,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1.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(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)를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경우

가. 취득한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로서 '20.7.9.까지 해당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나.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 소재지역이 현재시점 이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로서, 그 신규지정일 전까지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제 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제 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유예) 제7조에도 불구하고, 아래의 사유의 경우 제 7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본 대출 변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1. 무주택 가구가 본 대출기간 동안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제 5조에 따라

확인되는 경우 : 본 대출의 만기일자와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제 9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3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4)}이 제한됩니다. 단, 제 8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.

주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4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